

시정조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하수관이 미설치되어 있는 시외곽 G·B지역이나 독립가옥을 대상으로 마을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도림천 및 홍제천 2곳에 입지를 선정, 35천톤/일 규모의 시범성격의 소규모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임</p>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35천톤/일</li> <li>    ┌ 도림천 : 20천톤/일(관악구 신림동 144)</li> <li>    └ 홍제천 : 15천톤/일(서대문구 홍은동 428)</li> <li>• 사업기간 : '99~2005</li> </ul> <p>- 2002년까지 턴키계약 및 사업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 45,520백만원 (도림천 27,550백만원, 홍제천 17,970백만원)</li> </ul>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년 : 도식계획절차 이행(해당구 행정협의)</li> <li>- 2000년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li> <li>- 2001년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부지보상</li> <li>- 2002년 : 공사입찰 및 계약(턴키)</li> </ul>
<p>○ 정화조 오니케익 감량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화조 오니케익을 활용한 지렁이 사육을 확대하기 바람</p>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하수처리사업소 중 난지에서 정화조 오니케익을 활용한 「지렁이 사육사업」 추진</li> <li>• 지렁이 사육장 규모 : 1,200평</li> <li>• '98실적 : 정화조 오니케익 1,017톤 처리(예산절감액 : 28,242천원)</li> </ul>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지 「지렁이 사육사업」 확대추진</li> <li>• 지렁이 사육장 증설 : 1,200평→5,060평</li> <li>• 정화조 오니케익 12,000톤 감량</li> <li>• 지렁이 증식에 따른 잉여분 판매</li> <li>• 지렁이분 비료화 추진</li> <li>- 타 처리장 제반여건 검토후 확대추진여부 결정</li> </ul>

河川 覆蓋地上 商街아파트 對策

서민의 주택난 해소 및 하천정비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하천복개지상에 건립한 상가아파트의 지상권 존속기간 30년이 도래됨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 I. 商街 아파트 現況

구 별	위 치	아파트명	연면적 (㎡)	준공일자	준치만료	용도별	
						가 구	점 포
계	3개하천	11개동	71,358			607	740
성북구	성북천	삼선 A동	6,602	69. 2.17	1999. 2.16	65	122
		삼선 B동	1,625	70.12.24	2000.12.23	16	31
		삼익상가	9,860	72. 7. 3	2002. 2. 3	159	37
		성북 C동	2,876	73. 5.17	2003. 5.16	36	24
		성북 D동	4,716	73. 5.17	2003. 5.16	62	68
		성북OB동	4,424	73. 5.17	2003. 5.16	79	40
	성북 E동	525	73. 6.18	2003. 6.17	-	14	
	정릉천	풍교상가	1,557	69.11. 3	1999.11. 2	12	62
서대문구	홍제천	유진상가 (AB동1층)	11,262	70. 2.24	2000. 2.23	-	298
		A동(2~5층)	13,226	71.11.12	2001.11.11	91	-
		B동(2,3층)	5,210	71.11.12	2001.11.11	-	-
종로구	홍제천	신영상가	9,475	71.11.17	2001.11.16	87	44

※ 유진상가 B동(2,3층) 공가상태 : 서울시 소유

## II. 許可 內容

## 가. 복개 구조물

- 허가청 : 구청장(서울시 지침)
- 허가조건
  - 기부채납 : 복개구조물은 준공과 동시에 일체 시설물을 당시에 귀속한다
  - 존속기간 : 지상권 존속기간은 관련법규(민법 30년)에 의한다

## 나. 건물

- 허가청 : 구청장
- 허가조건
  - 복개 준공후 상가아파트 건립시 별도로 건축법에 의거 허가
- 건물 소유권 : 개별 등기

## III. 問題點

- 개발시대에 하천관리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시점에서 시행한 바 있는 하천복개 구조물(상가아파트)에 대하여

- 자연생태계 복원차원에서 하천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 기존 복개구조물의 철거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시기도래
- 복개 구조물과 일부 건물을 포함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대적 보수가 필요하며, 방치시 재해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
- 건물의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기간 갱신할 시 연장한 날로부터 최소 존속기간(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도록 함(민법 제284조)
  - 지상권 갱신을 거부할 시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가격(감정가) 보상을 해야 함(민법 제283조)

## IV. 主要 檢討事項

- 가. 하천 복개에 대한 시책방향 전환 필요
- 하천 복개로 하천내에 환기·채광이 되지 않아 자연생태계 파괴

○복개 구조물 설치로 홍수시 유수장애를 일으켜 수위상승 요인이 되어 재해발생 우려.

○하천 복개로 구조물내 준설 및 청소, 보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경제적 부담 가중

나. 안전한 주거공간

○하천 복개상·건물이 장기간 사용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위험 상존

○위험요소 상존으로 시설물 보수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대책 필요

다. 정당한 재산권 보장

○지상권 연장후 건물이 위험하여 사용제한·금지할 시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지상권 만료후 건물이 위험하여 지상권 설정자(서울시)가 계약갱신 거부후 보상할 시 지상권자(건물소유주)는 상당가액으로 보상함.

V. 細部 推進計劃

가. 지상권 연장불허(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

- 대상 : 11개동 66,148㎡
- 추정소요액 : 481억 9,200만('99~2003)
- 예산조치 : 소요예산은(자치구요청)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 반영 추진

나. 공공시설물(복개구조물)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

○소요예산 : 1억 6,800만원(재해대책기금 활용)

다. 하천정비

○건물철거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조, 별도 추진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검토보고요지

1. 조례개정안 제출근거 검토

시민생활에 관련된 규제사항을 개혁하기 위하여 육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 설치수량 제한사항을 철폐하고 사용기간을 폭넓게 허용하며 육교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조

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개정조례안 검토

가. 제8조(설치수량의 제한) 삭제

각 구별 설치수량을 3개소 이내로 제한 하였던 것을 삭제하여 시민이 원하는 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으려 규제조항을 삭제한 것임.

나. 제9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개정내용

(1) 제1항 : 사용기간 확대

육교의 사용기간이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연장 가능하였던 규정을 개정하여 육교사용 허가기간을 행사개시일 30일 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행사전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행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됨.

(2) 제2항 :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년 사용기한 철폐

장기간 게재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 사용 허가기간을 철폐한 것은 바람직하나 장기간 홍보물을 게재할 경우 광고물의 특성상 「안전도 문제」와 「노후화에 따른 도시미관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본 조례를 “서울특별시육교광고물등관리조례”에 통합·폐합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제3항 : 육교사용료의 형평성 고려

육교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게재한 시민보다 낮은 1/2수준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것을 일반 광고물의 점용료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4) 제4항 : 미사용 육교사용료의 반환

육교사용료를 납부한 후 육교사용허가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의 1/2을 반환토록 한 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개